#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480 제안연월일 : 2025. 2. .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537호)	박수영의원	2024. 10. 4.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4.11.13.)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 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의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782호)	최은석의원	2024. 10. 18.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4.11.13.)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 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의결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789호)	정태호의원	2024. 10. 18.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4.11.13.)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 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의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2025.2.11.)에서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2.18.)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위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사등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 및 항공기 부분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원재료의 관세감면과 관련하여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 폐지(안 제9조제4항, 제38조의5 및 제39조 제1항제6호 삭제)

성실납세신고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관세사등의 성실신고확인기한 및 성실납세신고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관세 납세신고제도 체계를 유지함.

나.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 연장(안 제89조제6항제1호)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일몰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다.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가상자산사업자 정의 수정(안 제264조의2제 7호)

과세자료 제출 기관과 관련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에 관한 조건을 삭제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함.

## 4. 부대의견

가.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특허청 등과 영업비밀, 산업 기술 침해 물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법률 제 호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5를 삭제하고, 제38조의6을 제38조의5로 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 및 제38조의5"를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로 한다.

제89조제6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28년 1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제264조의2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 사업자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및 제2조를 각 각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세액의 경정 등에 관한 특례) 납세의무자가 제8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되는 물품을 2025년 1월 1일부터 이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하고 같은 조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38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로부터 90일까지 신고한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감면율이 증가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혂 개 정 아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 | ④ <삭 제> 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의5제2 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 세신고(제38조제1항에 따른 납 세신고를 말한다)한 물품의 세 액을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성 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38조의5(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삭 제> 자의 성실납세신고 특례) ① 성 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 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 외한 물품에 대하여 납세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다시 한꺼번에 납세신고 (이하 이 조,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42조제1항에서 "성실납세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사등이 수입신고서에 적힌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성실납세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는 제27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신고 를 할 때 가격신고를 할 수 있 으며, 납세신고를 한 후에 그 세 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8조제5항에 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세신고한 세액 을 정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성실납세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38조의6 (생략)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 제39조(부과고지)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38조 및 제38조의5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 징수한다.

- 1. ~ 5. (생략)
- 6.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성실 | <삭 제> 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 가 성실납세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성실납세신고한 내용 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생략)

②·③ (생 략)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

|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38조의5 (현행 제38조의6과 같 유)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38조-

1. ~ 5. (현행과 같음)

- 6. (현행 제7호와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
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
한(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
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성실납세
신고 기한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
(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
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
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
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 2. (생 략)
② ~ ⑦ (생 략)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저

- ① ~ ⑤ (생 략)
-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 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 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 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 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제42조(가산세) ①
<u>(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u> 한"이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90조(세오보급처모표이 머ル)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관세를 감면한다.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 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 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 대상 물품 중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 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 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다.

2022년 1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월 1일부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터 2024년	부터 12	부터 12	부터 12	부터 12
12월 31일	월 31일	월 31일	월 31일	월 31일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100분의 1	100분의	100분의	100분	100분
00	80	60	의 40	의 20

## 2. (생략)

## (7)·⑧ (생 략)

-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저 범위) 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 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 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6. (생략)

	•
1.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1월 1일				
	부터 12				
	월 31일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Ī	100분의	100분의	100분의	100분의	100분의
	100	80	60	40	20

- 2. (현행과 같음)
- (7)·(8) (현행과 같음)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1. ~ 6. (현행과 같음)
-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산사업자(「특정 금융거래 가상자산사업자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 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 병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 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 2. (생 략)

3. 제9조제4항, 제38조의5, 제39 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의 개 정규정: 2028년 1월 1일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성실납세신고에 관한 적용 례) 제9조제4항, 제38조의5, 제3 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 28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법률 부칙 <삭 제>